



보도시점 2026. 4. 29.(수) 11:00
2026. 4. 30.(목) 조간 배포 2026. 4. 29.(수) 09:00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기 위한 첫걸음, 동물등록하세요 !

- 1차 동물등록 자진신고(5.1~6.30) 및 집중 단속기간(7.1~7.31) 운영 예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동물등록 미등록자 및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지방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및 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또는 등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5.1~6.30) 동안에는 동물등록 집중 홍보를 병행 하고,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9월부터는 2차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동물등록은 내장형과 외장형으로 등록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내장칩을 시술하거나 외장형을 구입한 후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등록 대행업자를 통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장형의 경우 파손 및 분실 우려가 있어 내장형 등록을 권장한다. 이후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록동물 사망 등의 경우 소유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동물복지정책과 이연숙 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 들이는 첫걸음이자 반려동물 분실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 강조하며 아직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동물복지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연숙 (044-201-2611)
	동물복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법진 (044-201-2623)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동물등록은 의무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동물보호법 제101조제3항제4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개)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1차

자진신고 5.1.~6.30.
집중단속 7.1.~7.31.

2차

자진신고 9.1.~10.31.
집중단속 11.1.~11.30.

동물등록 대상

2개월령 이상인 개
(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동물등록 이런 점이 좋습니다!

- ① 반려동물 실종 시 등록정보를 통해 신속한 주인 확인 가능
- ② 유기동물 발생 감소
- ③ 일부 공공시설 이용 가능 (반려동물 놀이터, 공원 등 지자체별 상이)

동물등록 방법

내장형 방식 안전합니다

- ① 동물병원 방문
- ② 내장칩 시술(주사)
- ③ 등록 완료



외장형 방식

- ① 시·군·구 및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병원 등) 방문
- ② 외장형 장치 구입
- ③ 등록 완료
-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변경신고 대상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변경신고 방법

- 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변경 신고
- ②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변경 신고
- ③ 정부 24에서 직접 변경 신고(소유자 변경, 사망, 잃어버림, 다시 찾음, 중성화신고만 가능)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방정부 관련부서(국번없이)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로 문의주세요.